



이혼 소장 송달의 중요성 소장 송달은 본인에게 정확하게

하여
나 요구
부동산
현 임
건물을
쫓겨나
산 주인
적으로
임대
달리의
권을 회
집체의
추하고
이다.
기간
을 5
m to
사전
데도
않아
책임
가 임
임대
임
리한
차갈
료를
동
들어
깊

이혼을 신청한 개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 송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소장 송달은 주로 법원의 Marshall이나, 송달 전문 회사의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장 송달 (Service of Summons) 이라고 본다. 소장 송달의 목적은 소송에 연루된 당사자에게 소송의 시작 및 진행을 알리어, 개인이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 및 이해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혼에 있어서도, 소장 송달은 최종 재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 이는 송달이 이루어진 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이혼이 완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혜원(가정법전문 변호사)

송달의 방식 및 절차는 캘리포니아주 민사 소송 절차법에 철저히 규정하고 있다. 법규에 어긋나게 이루어진 송달은 송달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송이 진행될 수도, 판결이 완료될 수도 없다. 또한, 합법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법원의 판결은 무효이다. 이혼의 경우, 소장 송달은 이혼 신청인이 아닌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장과 이혼 신청서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을 신청한 개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 송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소장 송달은 주로 법원의 Marshall이나, 송달 전문 회사의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소송에 연루돼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장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 끝이 나는 이혼에 있어서, 단지 죽기 살기로 소장 송달만 피하고 보자는 행위는 한 가정이 끼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한인 이혼 사례에 있어, 소장 송달을 목숨 바쳐 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송달 전문 회사로부터 가끔 코미디 같은 전화나 리포트를 받곤 한다.

두 자녀를 가진 어머니 의뢰인이 있었다. 남편인 A씨가 집을 떠나고 생활비 지급을 끊자, 당장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었다. 양육비를 보내 주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 6개월. 이제는 정식으로 이혼을 신청해서 법이 명령하는 양육비를 받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왔다.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송달 전문 회사에 A씨에게 이

혼 서류를 송달하라고 지시했다. 양육비가 급해 조만간 법원에 가야하니, 속성으로 송달할 것을 지시했다. 송달 마감 예정일, 밤 12시가 넘어서 송달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기를, A씨 집에 저녁에 갔더니, A씨의 어머니가 나와서 현재 A씨가 집에 없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는데 집에 들어올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A씨 어머니가 연락을 취해서 A씨가 송달을 일부러 기피하는 것 같으니, 일단 철수하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나갈 것을 부탁했다.

다음날, 송달 회사에 전화를 하니, A씨의 차가 집 앞에 주차돼 있고, 집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모든 창문 및 커튼이 닫혀 있고 벨을 눌러도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냥 기다리라 할 수가 없어 다시 철수하라고 했다.

이번에는, A씨가 집에서 나와 차를 타는 사이에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기에, A씨의 사진을 복사해서 송달 회사에 전달했다. 사진을 전달한 그 날 저녁, 송달 회사의 매니저가 전화를 해 와서 A씨에게 방금 송달이 됐다는 것이다. 어떻게 송달이 됐는지 물었더니, 매니저 왈, 그 날이 마침 할로윈 데이라 자기 딸과 그 친구들을 데리고 A씨 동네로 Trick-Or-Treat을 갔다는 것이다. A씨 집 벨을 누르니, 계속 응답이 없는데, 아이들이 갈 생각을 않고 계속 Trick-Or-Treat을 외쳤다는 것. 그 순간, 문을 빠르게 열면서 얼굴을 내민 A씨. 사진 속의 바로 그 얼굴이라, 정확히 A씨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 당신을 위한 송달 서류가 왔습니다, 하고 서류를 건네줬다는 매니저.

그렇게도 박쥐처럼 집 안에 숨어 있던 A씨가 송달을 받고는 도리어 집 밖으로 걸어 나와 Trick-Or-Treat을 외치며 떼지어 가는 어린이들과 매니저를 한동안 냅을 잃고 쳐다보더라는 것이다. 송달을 피하기 위한 숨바꼭질에 쓰인 시간과 정력을 양육비의 일부라도 내기 위해 일하는 데 썼다면 법정에서 서기도, 또 훗날 자식을 볼 때도 덜 부끄럽지 않을까 싶다. ㉞

문의 (213)251-5401

(위의 기사는 본 변호사와 관련된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본 기사를 위하여 가상적 인물 및 상황이 설정, 사용됐음을 알려드립니다.)